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574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574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9나331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7가단7397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1. 000

2.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9나3311 판결

판결선고 2010. 12.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은 000 주식회사(이하 '000'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3. 3. 11. 000의 정리회사 000 주식회사(이하 '000'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등 채권을 전부받은 사실, 원고는 000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2003. 10. 2. 000의 000에 대한 정리채권확정판결금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000는 2004. 2. 18. 000에 대한 정리채권확정판결금채무 중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4,446,914,379원을 집행공탁한 사실, 2004. 12. 20. 이루어진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2,081, 642,645원, 피고 000에게 193,700,958원, 피고 000에게 178,565,147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000에 대한 배당금을 46,311,313원으로, 피고 000에 대한 배당금을 42,692,542원으로 각 경정하고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 피고들이 받은 위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에서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삭제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재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000 소유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75,799,054,278원이 경매배당에서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전수안 주심 대법관 양창수